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97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5.

발 의 자: 金炳旭・이채익・배준영

조수진 • 태영호 • 황보승희

정희용 · 조명희 · 주호영

추경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·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 세 등을 면제하고,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고 있는데, 이 지방세 특례들 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·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,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 가 심화되고 있음.

이에 학교·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

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1조 및 제44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·제2항 본문·제3항 본문·제4항 ·제5항·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이 항에서 "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"이라 한다) 및 동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이 항에서 "전공대학"이라 한다)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 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.

제44조제3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6년 12월 31일"로 한

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	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
대한 면제) ① 「초・중등교육	대한 면제) ①
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	
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	
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	
관 설립・운영에 관한 특별	
법」 또는 「기업도시개발 특	
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	
경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	
"학교등"이라 한다)가 해당 사	
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	
득하는 부동산(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)에	
대해서는 취득세를 <u>2021년 12</u>	<u>2026년 12월 31</u>
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	<u>일</u>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	
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	
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	②
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	
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	

<u>2026년 12월 31일</u> -
③
<u>2026년 12월 31일</u>
4

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 제1 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 1일까지 면제한다.

- ⑤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,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,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 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-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

<u>20</u>	)26년 12월	3
1일		
⑤		
		<u>26</u>
년 12월 31일		
(6)		
		_
		_
	<b>_</b>	

-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각 <u>2021년 12월 31일</u>까지 면제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(한의과대학, 치과대학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)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.
- 1. (생략)
- 2.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.

가. • 나. (생 략)

제44조(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저 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

<u>2026년 12월 31일</u>	
,	
⑦	
1. (현행과 같음)	
2	- <u>2026년</u>
12월 31일	
	_
가.•나. (현행과 같음	
] ] ] ] ] ] ] ] ] ] ] ] ] ] ] ] ] ] ]	
	–
감면) ①	

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 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 분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재 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.

- 1. (생략)
- 2.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.

가. • 나. (생략)

로서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(이하 이 항에서 "전공대학"이 라 한다)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를 면제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(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|

1. (현행과 같음)
2 <u>2026년</u>
<u>12월 31일</u>
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 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 생교육시설(이하 이 항에서 "학 력인정 평생교육시설"이라 한 다) 및 동법 제31조제4항에 따 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이 항 에서 "전공대학"이라 한다)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

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

부분은제외한다)에대해서는2021년12월31일까지재산세를 면제한다.

③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
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④ (생 략)

과세기순일 현재 학력인성 평생
교육시설 및 전공대학에 직접
사용하는 부동산(해당 시설을
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
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)에 대해
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
산세를 면제한다.
③
<u>2026년 12월 31일</u>
<u>2026년</u>
<u></u> 12월 31일
④ (현행과 같음)